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단11729(본소), 2019가단1173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0. 6. 5.

판 결 선 고 2020. 6.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674,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674,4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325,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4.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과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는 2013. 7. 25. C에게 20,000,000원을 연 24%의 이율로 대여하였는데, 대여 당일 선이자 400,000원을 제외한 후 19,6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18. C에게 10,000,000원을 연 24%의 이율로 대여하였는데, 대여 당일 선이자 200,000원을 제외한 후 9,8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C는 원고에게 2014. 3. 29. 1,000,000원, 2014. 7. 25. 2,400,000원, 2014. 8. 25. 400,000원, 2014. 9. 23. 400,000원, 2014. 10. 19. 200,000원, 2014. 10. 24. 400,000원, 2014. 11. 19. 200,000원, 2014. 12. 26. 400,000원, 2015. 6. 3. 1,800,000원, 2015. 7. 22. 600,000원, 2015. 8. 31. 600,000원, 2016. 5. 27. 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7. 9. 29. C와 C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전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조합의 근저당권과 원고의 변제

1) C는 2013. 4. 19.경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500,000원으로 하여 E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2018. 6. 1.경 C의 E조합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인 30,325,590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8. 7. 13.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2115호로 위 30,325,59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18. 7. 18.자 지급명령은 2018. 8. 21. C에게 도달되어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8. 9. 5.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강제경매 및 배당

1) 원고는 2018. 7. 1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액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인 30,325,590원으로 기재하였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3. 4. E조합이 1순위 근저당권자로 5,244,685원,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2순위 압류권자로 710,590원, 원고가 3순위 근저당권자로 30,325,590원, 피고가 4순위 배당요구권자로 60,826,383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모두 변제충당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2017. 9. 29.경 원고의 C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40,000,000원을 상회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의 최권최고액이 52,000,000원으로 설정된 점, ③ 원고의 C에 대한 2013. 7. 25.자 및 2013. 12. 18.자 각 대여금 채권의 이율이 연 24%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그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기존 대여원리금 채권을 원금 40,000,000원, 이율 연 24%로 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은 53,729,315원[= 40,000,000원 + 2017. 9. 29.부터 2019. 3. 4.까지 연 24%의 이자 13,729,315원]으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52,000,000원을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았어야 한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1,674,410원(= 52,000,000원 - 30,325,5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12. 18.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C가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은 30,325,6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3. 4. 기준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53,729,31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배은창